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가단5010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임남구, 권정두, 송호섭

피고B

변론 종결2019. 12. 19.

판결 선고2020.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94,80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입원치료비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맺은 각종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2018. 10. 10.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32)에서 사기죄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4. 3.부터 6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항목이 포함된 6개의 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469,878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9.부터 2006. 12. 30.까지 52일간 부산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병증 등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증이 심하지 않아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E'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중 제4, 5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주식회사 등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805,913원(입원일수 합계 약 1,157일)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 편취금액 중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별지 '지급금액'표 기재와 같이 2007. 1. 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합계 41,494,808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불필요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 41,494,808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받는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룬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494,8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수익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홍도

별지